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8

발의연월일: 2021. 3. 15.

발 의 자:최혜영·강준현·김민석

김성주 • 박성준 • 서영교

신동근・오영환・이규민

인재근 · 임호선 · 정청래

정춘숙 · 조오섭 의원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동거 가족에게 1차적 신고의무를 일임하고 있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 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학대에 노출되더라도 국가의 공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또한, 사망의 경우 유족이 사망자의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85조의2, 제8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출생사실의 통지)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개 월 이내에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6조의3(출생신고의 확인 등) 제46조의2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송부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제44조에 따른 출생의 신고와 대조하여 제38조에 따른 신고의 최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5조의2(사망사실의 통지)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85조의3(사망신고의 확인 등) 제85조의2에 따라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송부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제84조에 따른 사망의 신고와대조하여 제38조에 따른 신고의 최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증명서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단서 또는 검안서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6조의2(출생사실의 통지) 분만
	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
	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6조의3(출생신고의 확인 등)
	제46조의2에 따라 출생증명서
	를 송부받은 시・읍・면의 장
	은 이를 제44조에 따른 출생의
	신고와 대조하여 제38조에 따
	른 신고의 최고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u> <신 설></u>	제85조의2(사망사실의 통지) 사망
	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작
	성하여 1개월 이내에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u>야 한다.</u>
<u><신 설></u>	제85조의3(사망신고의 확인 등)

제85조의2에 따라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송부받은 시·읍·면 의 장은 이를 제84조에 따른 사망의 신고와 대조하여 제38 조에 따른 신고의 최고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